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회의명 : 제21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회의일시 : 2021. 5. 26.(수) 10:00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참석위원 : 한상혁 위 원 장
김 현 부위원장
김효재 상임위원
김창룡 상임위원
안형환 상임위원 (5인)

불참위원 : 없 음

제21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10시 00분 개회 】

1. 성원보고

- 권희수 의안·정책관리팀장
 - 성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국기에 대한 경례

- 권희수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한상혁 위원장
 - 2021년도 제21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전차회의록 확인

- 한상혁 위원장
 - 제19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4-1. 서면회의 결과 확인

○ 한상혁 위원장

- 제20차 서면회의 결과 제기된 <의결안건> 2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회의록에 이의가 없으시면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한상혁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2건과 <보고안건> 2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 의결사항

가. 2021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세부계획(안)에 관한 건 (2021-21-070)

○ 한상혁 위원장

- 먼저 <의결안건 가> “2021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세부계획(안)에 관한 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우석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2021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세부계획(안)에 관한 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결주문입니다. ‘「2021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세부계획」을 <붙임>과 같이 의결한다’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재)국악방송 등 총 10개 방송사업자 10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세부계획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경과는 2019년 5월 10일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사전 기본계획을 의결한 바 있고, 이에 기반하여 올해 재허가 세부계획을 의결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재허가 대상은 2021년 12월 31일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총 10개사 10개 방송국이며, (재)국악방송(국악FM), (재)기독교방송(광주FM), (재)극동방송(전북FM) 등 라디오(3개사)와 수도권을 제외한 한국방송공사와 춘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제주지역MBC 그리고 대전방송 등 지역DMB 7개사입니다. 심사 기본방향입니다. 재허가 심사의 공정성, 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재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코로나19 등 재난·재해 발생 빈도와 피해 증가로 인해 재난방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므로 지상파방송의 재난방송 공적책무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재허가 심사 시 국민 참여 확대를 위해 방송과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청자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겠으며, 국민의 질의사항을 방송사 대표 등에게 직접 질의하고, 응답한 내용을 심사에

반영하겠습니다.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입니다. 심사위원회 구성은 9인으로 구성하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심사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 중에서 방송통신위원장이 상임위원들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심사위원은 방송통신위원장이 심사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겠습니다. 심사위원회 운영과 심사위원회 임무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심사항목 및 배점입니다. 심사사항 및 심사항목별 배점은 재허가 사전 기본계획을 따르되, 재난방송 실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므로 “재난방송 실시에 관한 사항”을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반영하고 배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세부심사 기준 등은 재허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허가 여부 등 결정입니다. 심사결과 총점 1,000점 중 650점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재허가’를 의결하고, 650점 미만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허가’ 또는 ‘재허가 거부’를 의결하겠습니다. 총점 700점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5년, 650점 이상 700점 미만 사업자에 대해서는 4년, 650점 미만 사업자는 ‘조건부 재허가’ 시 3년을 부여하며, 다만 동일한 방송사의 다른 방송국과 허가 유효기간의 불일치가 예상되는 경우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허가기간을 단축하여 동일한 허가 유효기간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650점 이상을 획득하더라도 개별 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하는 경우 재허가 신청서 및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경우에는 조건을 부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입니다. 5월까지 재허가 대상 사업자 설명회 및 재허가 신청 공고를 하고, 6월 말까지 재허가 신청서를 접수해서 11월~12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임>으로 2021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세부계획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사항이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김효재 상임위원

-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 동의 의견이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종래 진행되던 재허가 심사를 다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난번 재허가 심사 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재허가·재승인 제도 자체의 현실 적합성 부분을 고려해서 제도개선 문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한열 방송정책국장

- 예, 알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나. 2021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안)에 관한 건 (2021-21-071)

○ 한상혁 위원장

- <의결안건 나> “2021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안)에 관한 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소라 이용자보호과장

- 안전 보고드리겠습니다. <1> 의결주문, “ 「2021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를 '4. 21년도 평가계획'과 같이 의결한다”입니다. 제안이유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에 따라 「2021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평가계획을 심의·의결하고자 합니다. <3> 관련경과입니다. 2013년부터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피해예방 및 이용자 의견·불만 처리업무 개선을 위해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11개사를 대상으로 보호업무 평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14년에 알뜰폰, '16년에 네이버, 다음, 구글 등 포털, 2017년에 구글플레이 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윈스토어, 삼성전자 갤럭시 스토어 등 앱마켓, 2019년부터는 카카오, 페이스북, 유튜브 등 부가통신사를 평가대상으로 포함하여 꾸준히 대상을 확대해 왔습니다. 작년 11월 2020년도 평가결과를 발표하면서 알뜰폰 및 부가통신사업자 OTT나 라이브커머스 등에 대해 이용규모 및 민원 등이 증가됨에 따라 평가대상 확대에 대해서 검토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5월까지 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쳤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4> 2021년도 평가계획입니다. 평가 목적은 생략하겠습니다. 평가 대상으로 대상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평가 대상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이용자 규모 및 이용자 불만 발생 정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며 7개 서비스 분야, 총 40개 사업자를 평가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기간통신 분야의 경우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은 전년과 동일합니다. 아래 참고 <표> 보시면 알뜰폰의 경우 평가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국회의 지적 등을 고려하여 상위 10개 사업자로 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평가대상 목록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알뜰폰의 경우 KB국민은행, (주)큰사람, (주)인스코비가 신규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부가통신 분야의 경우 월간 이용자수가 1,000만명 이상인 서비스를 평가대상으로 하되, 이용자 규모 증가 등을 고려하여 평가분야를 세분화하고 평가대상을 추가하였습니다. 앱마켓의 경우 전년과 동일합니다. 정보유통 분야의 경우 월간 순이용자수가 1,000만명 이상인 사업자를 평가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포털의 경우 네이버, 다음, 구글, SNS의 경우 카카오톡과 페이스북이 들어가 있으며, 금년도부터 네이버밴드가 추가로 선정되었습니다. 미디어 분야의 경우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사업자 및 이용자 피해 사례가 많은 인터넷 개인방송 등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OTT는 작년 유튜브 외에 넷플릭스와 웨이브가 추가로 선정되었고, 인터넷 개인방송의 경우 트위치와 아프리카TV가 추가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급성장하고 있는 온라인 쇼핑·배달 서비스의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해 이용자 규모를 기준으로 배달의 경우 배달의민족, 쇼핑 분야의 경우 쿠팡, 11번가, 네이버쇼핑을 추가하였습니다. 아래 요약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평가 방식입니다. 평가방법은 사업자 제출자료를 기반으로 평가하되, 사업자 현장실사 등을 병행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평가결과 이의제기 절차를 도입하여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평가기준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이용자 보호 업무 관리체계의 적합성, 관련 법규 준수 실적, 피해예방 활동 실적, 이용자 의견 및 불만처리 실적 등을 평가하겠습니다.

니다. 배점 <표>는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평가항목입니다. 그간 내·외부 지적 및 의견, 최근의 통신서비스 이용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평가지표를 개선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개선사항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는 통신장애 관련 중요정보 제공, 비대면 이용자 보호 등을 평가하겠습니다. 이동전화 분야의 경우 5G 품질저하 등 문제발생 시 체감형 이용자 보호 노력을 평가하고, 초고속인터넷 분야의 경우 가입 시 요금상품별 최저속도 사전 안내 등 서비스 투명성 제고를 위한 현황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가통신의 경우 세부 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앱마켓의 경우에는 이용자 선택권 보장을 위한 인앱결제 외 결제방법 제공 여부 등 정보유통 분야의 경우 불법촬영물 및 허위 조작 정보 대응 노력, 미디어 분야의 경우 구독서비스 결제 관련 고지, 취약계층 미디어 접근권 보장, 쇼핑 분야의 경우 허위과장 상품정보 제공 방지 노력 등을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 평가위원회 구성·운영입니다.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 20인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평가결과의 활용입니다. 각 사업자별 평가결과는 등급별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금년도에 추가된 시범평가 대상 사업자의 경우 평가결과를 개별 통보하고 비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 사업자에 대해 표창 및 과정금 감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미흡사항 안내를 통해 업무개선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7월에 사업자별로 자료를 제출받고, 11월에 평가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사항이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효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효재 상임위원**

- 지금 구글 인앱결제 때문에 공정위와 방통위도 구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고 있지요?

○ **김재철 이용자정책국장**

- 예. 저희가 실태점검을 진행 중이고, 공정위도 조사하고 있다고 언론을 통해 밝히고 있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그러면 평가와 그것과는 별개로 이루어진 것입니까?

○ **이소라 이용자보호과장**

-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실태 점검이라든지 조사하는 부분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판단해서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의 경우에는 저희가 제재를 염두에 두고 있다기보다는 다양한 이용자 보호 관련 사항들을 평가해서 그 결과 공개를 통해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여기에도 보면 바로 그런 문제, 앱스토어에서의 독점 횡포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가 있는데 그것과 겹치지 않습니까?

○ 이소라 이용자보호과장

- 방통위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정책적으로 주안점을 두고 있는 사항들을 평가기준에 최대한 반영해서 법 위반 여부뿐만 아니라 좀 더 폭넓은 관점에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법 위반 여부는 좀 더 엄격하게 판단하는 편이고, 이런 평가기준에 대해서는 좀 더 다양한 부분들을 반영해서 이용자 보호가 폭넓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구글은 올해 처음 포함된 것이지요?

○ 이소라 이용자보호과장

- 구글의 경우에는 포털사업자 기준으로는 2016년부터 포함되었고, 앱마켓은 2017년부터 평가하고 있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그러면 올해 처음 들어온 곳은 어디어디지요?

○ 이소라 이용자보호과장

- 올해 처음 들어온 사업자는 5페이지 <평가대상 사업자 요약표>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알겠습니다. 처음 들어온 사업자들도 있고, 굉장히 많은 사업자들에게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이용자들이 불편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원안에 동의합니다.

○ 이소라 이용자보호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김창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창룡 상임위원

- 저는 이런 평가를 통해 이용자들의 서비스 개선을 높이는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계획을 보니까 작년에 비해 알뜰폰 사업자가 7개에서 10개로 늘어났고, 또 부가통신사업자도 10개에서 19개로 대폭 늘어나서 평가 대상이 크게 증가했다는 것은, 일은 많겠지만 저는 더 보람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알뜰폰 가입자 수가 1,000만명을 눈앞에 두고 있고, 최근 유튜브와 카카오톡의 접속장애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부가통신사업자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만큼 이 평가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작년에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 꼭 법에 근거한 패널티가 아니더라도 평가의 실효성을 좀 더 높이기 위해 사업자가 보다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이용자를 보호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에도 대해서도 고민과 또 대안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입니다. 안전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안형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안형환 상임위원**

- 금년도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계획의 특징은 평가대상 확대와 평가기준 그리고 평가절차의 개선으로 보입니다. 특히 미디어와 온라인 쇼핑·배달 분야 부가통신사업자까지 평가대상을 확대한 것은 비대면 시대에 폭발적으로 소비가 늘어나면서 이용자 민원도 급증한 분야를 이번 평가에 포함시킨 만큼 매우 의미 있는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들 분야에서 최초로 평가를 받는 사업자가 다수이다 보니까 제대로 내실 있는 평가가 진행될 수 있을지 조금은 우려가 됩니다. 사무처에서는 평가대상 사업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고, 또 소통을 통해서 충실한 평가가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원안 동의해 주셨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 현 부위원장**

- 2021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 보호 업무 평가계획(안)에 대해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올해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의 평가대상과 분야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통신기술 발달과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부가통신서비스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이용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용환경을 신속하게 반영해서 개인방송, 배달·쇼핑 분야까지 대상을 선정하고 평가기준을 만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비대면 시대에 이용자 보호, 초고속인터넷 속도 안내 및 측정 결과 고지 여부, 인앱결제 외 결제방법, 허위과장 상품정보 제공 방지 등 평가기준은 최근 현안으로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를 통해 사업자들의 업무처리 방식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해외 사업자의 경우에 최초 평가할 때 자료 제출이나 협조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올해 평가받는 사업자들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잘 안내하고 국내외 사업자 역차별에 대한 이슈도 있는 만큼 동등한 기준으로 공정하게 평가해 주기를 바랍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원안 동의 의견이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업무 중에서 이용자 보호 업무는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이용자 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수단으로 일종의 최소한의 기준인 금지행위를 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한 침익적 행정처분을 하는 것 외에도 이처럼 업무 전반에 대한 평가를 통해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우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용자 보호 업무의 실효성을 높이는 이런 방안 중 아주 유력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이런 세밀한 평가를 통해 이용자 보호에 보다 만전을 기할 수 있는 이런 업무들을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 안전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7. 보고사항

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나.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 한상혁 위원장

- 다음은 <보고안건 가> “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고안건 나> “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은 두 건의 논의내용이 서로 연관되어 있으니 회의 진행의 효율성을 위해 함께 묶어서 보고를 받고 논의하는 방식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인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두 건을 이어서 한꺼번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낙준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이동통신 유통망 경쟁을 통한 이용자 후생 증진을 위해 유통망에서 지급할 수 있는 추가지원금 한도를 상향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현행 6%인 환급 가산금 요율을 시중금리를 고려한 요율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경과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 지원금 확대에 대한 추진배경입니다. 단말기 유통법 제정 이후 가계 통신비가 인하 추세이지만 단말기 비용은 오히려 늘어나서 가계 통신비 인하효과를 반감시키고 있습니다. 단말기 가격이 고가화되는 상황에서 단말기 가격을 할인하는 공시 지원금은 경쟁이 미흡하여 이용자의 눈높이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 다음 현황입니다. 단말기 유통법은 누구나 동일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이통사에게 단말기 지원금을 투명하게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실제 단말기를 판매하는 유통점에서는 해당 공시 지원금의 15%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일부 유통망에서는 법정 한도 15%를 초과해서 불법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이런 사례들이 존재하고 있고, 이는 이통사의 과도한 판매 장려금과 불필요한 고가 요금제·부가서비스 등을 끼워 팔아 얻는 수익이 활용된 결과로 법을 지키는 대다수의 유통점은 가격 경쟁력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정내용입니다. 단말기 유통법상 유통점이 지급할 수 있는 추가 지원금 한도를 현행 15%에서 30%로 상향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법 제4조제5항을 개정하는 내용들입니다. 이통사와 유통점의 추가 지급 여력과 이용자의 체감 혜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존 한도에서 두 배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개정 문안은 아래 <표>와 동일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이해관계자 의견들은 시민단체는 이용자 후생을 증진시키는 입장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찬성한 반면 이통사와 이동통신 유통협회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 부분입니다. 공시 지원금을 확대하여 이용자의 단말기 구입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7만원대 요금제 기준으로 하면 최대 약 4만 8,000원 정도의 할인혜택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환급 가산금 요율 개정 및 범위 명확화 부분입니다. 법원 판결 등의 사유로 이미 부과된 과징금을 환급할 경우에는 과징금을 낸 날부터 환급하는 날

까지 약 6%의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환급가산금의 요율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중금리보다 낮거나 높게 정해질 경우 환급가산금 지급 시 금리 차이로 인해 환급대상자에게 손실 또는 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에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른 법과 유사하게 시중금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고정금리로 명시된 것을 대통령령에 정하는 이자율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저희 방통위 소관인 전기통신사업법은 이미 이렇게 법 개정이 이루어져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을 준용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연 1.2% 적용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안 개정(안)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일정은 보고를 원안대로 접수해 주시면 바로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건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안건은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이통사가 지원금을 공시할 때는 7일 이상이 지나면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어 지원금 경쟁이 활성화되지 않고, 이용자에게 예측가능한 공시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공시 주기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경과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규정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7일 이상 동일한 지원금을 유지하도록 고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최초 공시 이후 7일이 지나면 이통사는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하여 이용자 입장에서는 언제 변동될지 예측하기 어렵고, 이통사 간 경쟁 활성화를 위하여 최소 기간 7일의 단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정 사업자가 공시 지원금을 인상하면 경쟁사도 곧바로 유사한 수준으로 인상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인상을 한 사업자의 가입자 유치효과가 낮아져 공시 지원금 경쟁 유인을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용자의 인식 가능성을 제고하고 지원금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가능한 날을 월요일과 목요일로 지정해서 경쟁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이해관계자 의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이통사와 유통협회는 잦은 공시 변경으로 이용자 차별 발생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이유에 따라 반대하고 있으며, 시민단체들은 경쟁 활성화를 위해 찬성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기대효과는 이용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공시 지원금 인상을 통한 경쟁효과를 보장하기 위해 공시 지원금 경쟁이 유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일정은 보고를 접수해 주시면 고시 개정 절차에 따라 행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사항이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효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효재 상임위원**

- 한 업체에서 공시 지원금으로 얼마를 준다고 월요일에 밝히면 7일 후가 아니라 경쟁업체는 목요일에 따라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 **고낙준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대체로 이통사들이 동일한 날에 단말기를 출시하고 있기 때문에 3사가 동일하게 첫 공시를 시작합니다. 그다음에 7일까지는 동일하게 유지해야 하고, 8일차

부터 아무 때나 변경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첫 공시는 상관이 없고 변경이기 때문에 변경할 때만 월요일과 목요일에 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들이 단말기를 살 때 월요일과 목요일 그 즈음에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러면서 이용자의 예측 가능성도 생기고, 사업자들에게도 공시 지원금 경쟁을 통해 타사가 바로 따라서 공시지원금을 올리면 어떻게 보면 경쟁효과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쟁에 대한 이익 보장 측면에서 텀을 준 것입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한 번 얼마를 준다고 하면 3일 정도 여유를 준다는 것입니까?

○ 고낙준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 예, 그렇습니다. 현재 월·목으로 지정하면 7일에서 3일 또는 4일로 줄어들게 됩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대개 통신비용 증가가 두 가지 분야에서 발생하지 않습니까? 하나는 이용요금제에서 발생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단말기 자체가 너무 고가라서 이것이 요금제 할인이나 할인을 줘도 문제가 자꾸만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손대는 것은 단말기 자체의 가격 문제는 우리가 손대지 않은 것이지요?

○ 고낙준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 단말기 가격 자체는 제조사가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 김효재 상임위원

- 단말기 가격을 낮추기 위한 조치는 없습니까?

○ 고낙준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 단말기 가격을 낮추기 위한 경쟁 활성화를 위해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단말기 책정 자체에 대해서는 제조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 현재 얼마다, 출고가를 정하는 것 자체를 저희가 간섭할 수 없지만 이통사들끼리 단말기 가격을 좀 더 낮추기 위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이번에 LG도 스마트폰 사업을 철수하는 것과 상관관계는 없습니까?

○ 고낙준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 현재 30% 올리는 부분은 주로 재원이 이통사에서 나오는 장려금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계는 크지 않지만 제조사가 줄어들면서 제조사가 주는 장려금 부분이 줄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그렇지요.

○ **고낙준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 그렇게 되면 장려금을 통해 공시 지원금이나 여러 가지 비용으로 쓰이게 되는데 그 부분이 줄어들 가능성이 존재하고, 그렇게 된다면 간접적으로 출고가 인상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우려도 존재합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김창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창룡 상임위원**

- 지금 보고하신 단말기 유통법 개정안은 유통점이 지급할 수 있는 추가 지원금 한도를 30%로 상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용자의 단말기 구입비용과 유통점의 불법행위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사무처에서는 법 개정 취지에 맞게 비즈니스 현장에서 이 입법 취지가 잘 정착되도록 계도와 감시의 역할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달부터는 아쉽게도 단말기유통조사단이 직제팀으로 변경됩니다. 지난 6년 동안 단말기유통조사단이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제재처분 등을 실시해서 이용자 차별 완화와 전체적인 통신비용 절감에 기여해 왔고, 이를 통해 통신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권익보호라는 단말기 유통법의 입법취지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직제팀으로 변경될 경우에는 단말기 유통법 위반 불법행위가 다시 횡행하게 될 것이라는 일부의 우려가 있는데 팀 체제에서도 이동통신 단말기 시장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 조성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사무처에서 잘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다른 분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안형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안형환 상임위원**

- 2014년 10월에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된 이후에 벌써 7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의 이 법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국민의 눈높이와 시장 현실을 반영한 법·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당사자 간의 입장차 등으로 인해 개정이 늦어지게 된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공시 지원금 추가 지급 한도를 인상해서 소비자 혜택을 확대하고, 공시기간 단축을 통해 사업자 간 경쟁을 활성화하는 개정안이 마련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처에서는 이후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사무처 원안에 동의합니다.

○ **김 현 부위원장**

-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유통점에서 지급하는 추가 지원금 한도를 확대하는 것은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에도 도움이 되는 한편, 합법적인 추가 지원금만 지급받았던 이용자들의 혜택을 증가시켜 불법지원금 지급으로 인한

이용자 간 차별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원금 공시 및 게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관련해서 이용자는 공시 지원금이 유지되는 기간을 예측할 수 있게 되면서 안정적으로 단말기 구매 결정을 할 수 있고, 사업자 측면에서도 경쟁사가 곧바로 공시 지원금을 인상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마케팅 수단으로써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안건 만드느라고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것이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상당한 반발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그리고 인상폭을 30%로 한 것도 이용자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누리기 위해 더 높은 수준으로 올리는 것이 타당하겠으나 유통망별로 지급여력이 달라서 반대 의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상폭은 기존에 2배 정도로 결정된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불법적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을 합법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불법적인 지원금 문제는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그래도 이 제도의 틀을 벗어나서 불법적인 지원금을 통해 이용자들의 차별을 발생시키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단속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국민 불편 해소와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변경되는 제도들에 따라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 역시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8. 기 타

○ 한상혁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김효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효재 상임위원

- 두 가지 정도 상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첫째는 경기방송입니다. 어제 다른 상임위원님들께도 찾아갔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 언론노조위원장과 경기방송 노조위원장과 세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빨리 어떻게 해 달라”고 하소연을 하였습니다. 상당히 공감을 했고, 저희가 지난 5월 6일 경기방송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때 지상파방송정책과장이 “곧 2차 추가 토론회를 열고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그 자리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보니까 경기방송 주파수와 관련하여 관심을 보이는 사업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알려져 있다시피 이미 경기도에서는 의회가 조례를 통해 TBS와 유사한 형태의 라디오방송을 가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민간 사업자들도 활발하게 참여의사를 밝히고, 그날 제가 가서 토론회를 보니까 공개적으로는 밝히지 않았지만 경찰청 한국교통방송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봤을 때 빨리 서둘러야 하는 것 아닌가, 정파된 지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서둘러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 노조위원장이 와서 뜻밖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상당한 오해가 있던데,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특정 사업자가 방송을 준비하게 하는 시간을 벌여주기 위해서 방통위가 시간 끌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오해를 하기에 “그것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언론노조위원장님이 SBS 출신 아닙니까?

○ 한상혁 위원장

- 예.

○ 김효재 상임위원

- “위원장도 알다시피 TV 방송은 막대한 돈과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만 라디오방송은 그렇게 막대한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많은 인력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다. 준비하는 데 많은 시간과 많은 인력이 들어가야 하는 것도 아니다. 그럴 리가 있겠는가? 그것은 오해다”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여하튼 그런 불필요한 오해까지 사면서 저희가 이 문제를 계속 계류시킬 이유가 있겠는가, 제 생각은 경기방송 문제는 이쯤에서 그때 김우석 과장이 “5월 내 2차 토론회를 한 번 하겠다”라고 공개적으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벌써 5월 말인데 이쯤에서 방통위원장님도 뭔가 우리의 원칙을 만들고, 그다음에 관심을 보이는 사업자가 많으니까 원칙에 따라 심의하고 사업자를 선정하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제가 파악하기로 지난번에는 토론회를 한 것 같습니다. 토론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가지고 우리 위원회의 신규 사업자 허가와 관련된 일정과 주요 사항들, 고려 사항들에 대한 토론회로 수렴된 의견을 가지고 그런 내용들을 정리한 다음에 위원회 의견을 가지고 공청회를 거쳐 안을 확정하는 절차들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을 5월에 진행하겠다고 했고, 지금 사무처에서도 그런 내부 안은 준비하고 있지요?

○ 최성호 사무처장

-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그 안이 준비되는 대로 안과 관련된 찬반 의견을 한 번 묻는 공청회를 갖고, 그 이후 그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사무처에서 준비하는 대로 가급적 빨리 진행하도록 하지요.

○ 김 현 부위원장

-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방송이 폐업이라는 전례가 없는 사건이 벌어졌고, 위원장님도 1년이 되었고 경기방송의 정상화를 위해 방통위가 잘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을 공개회의 때 한 번 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자 하는 방송사와 그다음에 경기도가 있고, 그리고 언론노조에서 경기방송 종사자들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너무 늦지 않게, 그렇다고 졸속한 형태로 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잘 진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다루어야 할 사안이니 만큼 그 문제와 관련해서도 토론회나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보다 경기도민에게 알권리,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방송으로서의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함과 동시에 경기방송이 폐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종사자들에게 다른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특히 노조위원장의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나왔던 이야기처럼 방통위가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잘 설명하는 일도 동시에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김창룡 상임위원**

- 저도 한 말씀만 드리면 저는 불필요한 오해나 억측이라는 것은 제때 정보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 생겨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무 차원에서 준비를 많이 하였고, 또 그런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앞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 공고가 되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니깐 그런 점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한 말씀만 덧붙이자면 어제 그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방통위가 계속 이르고 있으면 노동조합으로서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기에 사실은 은근한 협박인데,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국민들이 이러저러한 갈등 때문에 정말 마음도 피폐해지고 피곤한데 여기에 또 하나의 피곤함을 얻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닌 것 같다. 방통위가 최선을 다할 테니 그런 것은 자제해 달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사무처에서 한 번 언론노조에 그간의 경과를 소상하게 알리고, 지금 알리지 않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고의로 뭔가를 한 것도 아니니까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해서 한편으로 일을 진행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쪽과 소통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이렇게 마무리하시지요.

○ **안형환 상임위원**

- 간담회에서 이야기하시지요.

○ **한상혁 위원장**

- 마무리해서 절차대로 진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하나 더 말이 많아졌는데 엇그제 언론에 TBS가 라디오방송만 하는 것이 아니라 라디오방송을 그대로 갖다가 TBS TV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갖다 넣었는데, 야당에서 “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문제제기를 하니깐 방통위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TBS TV는 허가사항이 아니고 신고만 하면 되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그것은 방통위 소관이 아니다”, 또 과기정통부는 “편성에 관해서는 방통위가 해야 할 일이지

과기정통부가 해야 할 일이 아니다”라고 해서 핑퐁이 되었습니다. 어제 해당 담당과장에게 설명을 들으니 한편으로 이해가 됩니다. “법 해석 상 라디오방송은 지상파라디오로 허가 사항이기 때문에 라디오방송의 편성에 관해서는 방통위가 감시할 권한이 있으나 라디오방송을 그대로 갖다 넣는 TV는 방통위 소관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그것은 과기정통부에 신고만 하면 되는 사업체이기 때문에 과기정통부의 사안이다.” 그리고 과기정통부는 “편성에 관해서는 우리 사안이 아니다” 법적 해석만으로 보면 양자 간 다 일리가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행정 소비자가 국민 아닙니까? 만약 그렇다면 TBS TV는 어떤 일을 해도 어떤 행정기관으로부터 어떤 감시도 받지 않는 그런 초법적인 존재가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럴 일이 아니라 제 생각에 이것은 법으로 그렇게 상호 간 주고받는다면 부처 간에 만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지 상의하고 그러고 나서 뭔가 해결할 방안을 찾아야지, 서로 “이것은 내 것 아니다”, “이것은 내 것 아니다” 이렇게 하고 말 일인가? 그 생각이 들어서 사무처가 방통위의 입장에서 그 법 해석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과기정통부와 한 번 상의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길게 이야기하실 필요 없고, 이 문제는 소관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 자리에서 다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고, 사전에 관련된 내용들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제가 보고받기로는 언론보도처럼 양 부처가 서로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핑퐁 친 것도 아니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부정확한 보도를 전제로 이 자리에서 논쟁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아닙니다. 제가 상황을 파악해 보니까 보도가 부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그 부분에 이야기가 많이 빠져 있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물론이지요.

○ **한상혁 위원장**

- 전체적인 내용이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체회의 자리에서 정제되지 않은 논의를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김효재 위원님께서 그런 문제제기하시는 정도로 정리하시고 이 부분은 추후에 다시 논의하시지요.

○ **김 현 부위원장**

- 문제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논의하는 방식은 저희가 그동안 해 왔던 방식으로 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만, 김효재 위원이 제기하였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사무처에서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어떻게 되었는지 경과에 대해서 소상하게, 이 자리가 어차피 언론에 공개가 되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범상 어떤 체계가 갖추어져 있고,

근원이 어떻게 되어 있고, 타방송의 사례가 어떤지에 대한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자리에서 논의하자는 것은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최성호 사무처장**

- 말씀하신 것에 대한 위원장님 말씀대로 언론에 생략된 부분이 있어서 정확하게 보도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하나 설명하는 것이 너무 길어질 수 있고, 또 부족한 설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김효재 위원님 말씀대로 어쨌든 국민의 입장에서는 어느 부처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쪽도 과기정통부와 잘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원만하게 설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안형환 상임위원**

- 그러면 경과에 '중간에 빠진 내용'이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전체를 정리해서 우리 위원들 방에 넣어주십시오.

○ **최성호 사무처장**

- 위원님들께 추후 보고드리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보고를 받으시지요.

○ **김 현 부위원장**

-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국회 상임위에서 이 문제에 대해 질의가 있었고, 물론 다른 문제였습니다. 지금 김효재 위원님 이야기한 그 문제가 아니고 TBS와 TBS TV에 대한 내용들이 준비된 쪽 경과가 있지 않습니까? 상임위를 대비하기 위해서, 상임위를 담당하는 위원에게는 보고가 되었으니까 그 내용이 국민에게도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 **최성호 사무처장**

-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지 방법은 고민해 보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사안 자체가 일부의 주장에 의해서 논란이 시작되고 그 논란이 언론에 의해서 부처 간 대립으로 비춰지고 이런 모습은 제가 보기에 적절치 않은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관련되어서 논의가 되려면 각자 다른 의견들이 충분히 제시가 되고 그 부분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 자리에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준비해서 보고해 주시고, 그 내용을 가지고 절차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최성호 사무처장**

-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더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차기 회의는 별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폐 회

○ 한상혁 위원장

- 이상으로 2021년도 제21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50분 폐회】